

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(2016.1.27.)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2	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5
3	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7
4	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-----	9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
 - 현행: 598명(본청 276명, 의회 11명, 직속기관 94명, 사업소 45명, 읍 36명, 면 136명)
 - 조정: 598명(본청 278명, 의회 11명, 직속기관 94명, 사업소 43명, 읍 36명, 면 136명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「주민투표법」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‘주민등록번호’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‘생년월일’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항 변경 (안 제4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
- 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
 -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⇒ 생년월일 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주민등록번호 ⇒ 생년월일(별지 제3호 서식)

-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“주민등록번호란 설명” 삭제 (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)
- 다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(안 제14조, 안 제18조)
- 자 ⇒ 사람, 범위 안에서 ⇒ 범위에서
- 라.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도록 함(별지 제5호 서식)
- 지번 ⇒ 도로명과 건물번호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변경하며,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별지 제1호, 제7호 서식)
 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 ⇒ 제16조의4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

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. 1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. 11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. 26.

2. 요구이유

-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장애인근로사업장 지붕과 제1주차장, 제2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원면 복지영농조합에서 부지사용 신청이 있어
- 주차장 기능은 현황과 같이 유지하고 잔여부지 사용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임.

3. 재산의 표시 및 설치계획도

- 재산의 표시

위 치	면 적	태 양 광 설치면적	용 량	사용허가신청자
남상면 대신리 1546(장애인근로사업장)	1,236㎡	618㎡	90kw	신원1복지영농조합 대표 곽준섭
남상면 대신리 1564(제1주차장)	4,387㎡	576㎡	90kw	신원2복지영농조합 대표 박문규
남상면 대신리 1603(제2주차장)	3,089㎡	569㎡	90kw	신원3복지영농조합 대표 김운용

- 설치계획도: 별지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동의안은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』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
- 공유재산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두 곳의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
-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대명지이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후 기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상면, 신원면 주민이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면민복지에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등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